

2019년도 문화재위원회

제12차 건축문화재분과위원회 회의자료

- ▣ 회의일시 : 2019. 11. 21(목), 14:00 ~
- ▣ 장 소 : 국립고궁박물관 회의실
- ▣ 안 건 : 총 24건
 - 심의 18건(예천 용문사 대장전과 운장대 국가지정문화재(국보) 지정 등)
 - 검토 5건(서울 동관왕묘 보수 관련 설계 검토 등)
 - 보고 1건(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처리결과 보고)

문 화 재 위 원 회

목 차

【심의사항】

1	예천 용문사 대장전과 윤장대 국가지정문화재(국보) 지정	
2	달성 현풍 석빙고 주변 도시계획도로 확·포장 공사	
3	봉화 서동리 동·서 삼층석탑 주변 인도교 설치 공사	
4	안동 하회 충효당 생활편의시설 설치(2차)	
5	칠곡 송림사 오층전탑 주변 창고 건립	
6	칠곡 기성리 삼층석탑 주변 근린생활시설 신축(변경허가, 2차)	
7	청양 읍내리 석조여래삼존입상 주변 공동주택(고령자 복지주택) 신축	
8	용인 서봉사지 현오국사탑비 주변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신축(4차, 재심의)	
9	완주 송광사 대응전 주변 종각 건립(재심의)	
10	파주 공효공 박중손묘 장명등 주변 방송통신시설(3부지) 신축(재심의)	
11	파주 공효공 박중손묘 장명등 주변 방송통신시설(4부지) 신축(재심의)	
12	파주 공효공 박중손묘 장명등 주변 방송통신시설(5부지) 신축(재심의)	
13	구례 연곡사 동 승탑 주변 길상암 건립(변경허가, 2차)	
14	안성 봉업사지 오층석탑 주변 주택 신축 및 도로 개설	
15	장흥 보림사 남·북 삼층석탑 및 석등 주변 명상힐링센터 건립	
16	고성 건봉사 능파교 주변 템플스테이 체험관 및 부대시설 건립	
17	철원 도피안사 삼층석탑 주변 단독주택 부지조성(변경허가, 2차)	
18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안)	

【검토사항】	
19	서울 동관왕묘 보수 관련 설계 검토
20	나주 철천리 석조여래입상 보호각 건립 검토(2차)
21	김천 직지사 유물 수장고 건립공사 설계 검토
22	완주 안심사 요사채(공양간) 개축공사 설계 검토
23	창녕 인양사 조성비 보호구역 추가 지정 검토
【보고사항】	
24	<p>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처리결과 보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 주변 마을안길 정비공사 -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 주변 세천 정비공사 - 예천 청룡사 석조여래좌상 주변 삼성각 개축(변경허가) - 여주 창리·하리 삼층석탑 주변 주내로 일원 보도설치 - 장수향교 대성전 주변 장수초 창의모험 놀이터 조성 - 장수향교 대성전 주변 청소년 놀이공간 조성사업 - 논산 개태사지 석조여래삼존입상 주변 마을안길 포장공사 - 대구 동화사 대웅전 주변 부도 및 행화비 건립 및 석축 설치 (변경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실 진구사지 석등 주변 농막 설치 - 영덕 유급사 삼층석탑 주변 지붕 위 태양광 설치 - 진도 금골산 오층석탑 주변 동식물관련시설 축사(우사) 신축 - 경산 팔공산 관봉 석조여래좌상 주변 생태탐방로 조성사업 - 경주 서악동 귀부 주변 단독주택 건립 - 제천 신흥사 삼층석탑 주변 소방방재시설 구축 - 장흥 보림사 남·북 삼층석탑 및 석등 주변 유지천 복원정비사업 - 안성 청룡사 대웅전 주변 청룡 소하천 정비 - 서울 동관왕묘 주변 기존 하수관거 개량 및 신설 - 부산 내소사 대웅보전 주변 가을 산사음악회 개최 - 거창 농산리 석조여래입상 주변 동식물관련시설(우사) 적법화

【심의사항】

안건번호 건축 2019-12-001

1. 예천 용문사 대장전과 윤장대 국가지정문화재(국보) 지정 심의

가. 제안사항

경북 예천군 소재 「예천 용문사 대장전과 윤장대」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국보) 지정 신청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경북 예천군 소재 「예천 용문사 대장전과 윤장대」를 국가지정문화재(국보)로 지정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경상북도지사
- (2) 대상문화재 : 보물 제145호 「예천 용문사 대장전」,
보물 제684호 「예천 용문사 윤장대」
 - 소재지 : 경북 예천군 용문면 용문사길 285-30(내지리 391번지)
 - 지정일 : 1963. 01. 21. / 1980. 09. 16.
- (3) 신청내용 : 국가지정문화재(국보) 지정 신청
 - 명칭 : 예천 용문사 대장전과 윤장대(醴泉 龍門寺 大藏殿과 輪藏臺)
 - 소유자(관리자) : 용문사(용문사)
 - 소재지 : 경북 예천군 용문면 용문사길 285-30(내지리 391번지)
 - 조성연대 : 조선시대/고려시대
 - 지정면적 : 135.6㎡(보호구역 14,060.4㎡)
 - 구조/형식 : 대장전(목구조/오량가/맞배지붕), 윤장대(목구조/불교공예/팔각지붕)

2. 달성 현풍 석빙고 주변 도시계획도로 확·포장 공사

가. 제안사항

대구 달성군 소재 보물 「달성 현풍 석빙고」 주변에 도시계획도로 확·포장 공사를 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에 도시계획도로 확·포장 공사를 하고자 하는 행위가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1구역 “개별심의” 및 제4구역 “달성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에 해당됨.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 : 달성 현풍 석빙고
 - 소재지 : 대구 달성군 현풍읍 상리1길 36
 - 지정일 : 1980. 09. 16.
-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대구 달성군 현풍읍 상리 632번지 일원
 - 문화재와 이격거리 : 보호구역에서 48m
 - 사업내용 : 도시계획도로 확·포장 공사
 - 길이 : 267m(총 길이 680m), 폭 : 19m(기존 12m)
 - 토공
 - 흙깎기 : 5,063m³
 - 흙쌓기 : 89m³

- 우수공
 - 측구(L형, 옹벽식 L형) : 655m
 - 중, 횡배수관 : 280m
- 포장공
 - 도로아스팔트포장 : 3,458m²
 - 보도블록포장 : 1,080m²
- 가옥철거 : 2동

3. 봉화 서동리 동·서 삼층석탑 주변 인도교 설치 공사

가. 제안사항

경북 봉화군 소재 보물 「봉화 서동리 동·서 삼층석탑」 주변에 인도교 설치 공사를 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 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에 인도교 설치 공사를 하고자 하는 행위가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1구역 “개별심의” 및 제3구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에 해당됨.(공통사항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 : 봉화 서동리 동·서 삼층석탑
 - 소재지 : 경북 봉화군 춘양면 서원촌길 8-14(서동리)
 - 지정일 : 1963. 01. 21.
-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경북 봉화군 춘양면 서동리 709번지 일원
 - 문화재와 이격거리 : 보호구역에서 165m
 - 사업내용 : 인도교 설치
 - 규모 : B=3.0m(8.0m), L=70.0m, H=3.4m
 - 비너 조형물 : H=15.0m
 - 구조 : 히로 아치교
 - 재료 : 상부-강재, 기초-철근콘크리트, 강관말뚝

4. 안동 하회 충효당 생활편의시설 설치(2차)

가. 제안사항

경북 안동시 소재 보물 「안동 하회 충효당」에 생활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에 생활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행위가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당해 문화재임.
- ※ ‘19년 문화재위원회 제9차 건축문화재분과 심의결과(2019.09.19.) : 부결
 - 원형을 변경하지 않는 방식으로의 시행을 권고함.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
- (2) 대상문화재 : 안동 하회 충효당
 - 소재지 : 경북 안동시 풍천면 종가길 69(하회리)
 - 지정일 : 1964. 11. 14.
-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경북 안동시 풍천면 종가길 69
 - 문화재와 이격거리 : 당해문화재임.

○ 사업내용 : 생활편의시설 설치

구분		1차 ('19.09.19. / 부결)	금차
안채	내용	문간채 광2개소 → 욕실 2개소	문간채 광1개소 → 욕실 1개소
	면적	13.08m ²	6.42m ²
행랑채	내용	정지1칸, 광1칸 → 욕실 2개소	정지1칸 → 욕실 1개소
	면적	13.0m ²	6.50m ²
기타		4개소에 환기구 2개, 환풍기 5개 설치	2개소에 환기구 2개, 환풍기 3개 설치
습기(결로) 대책		-	기둥 하부 단열재 설치

5. 칠곡 송림사 오층전탑 주변 창고 건립

가. 제안사항

경북 칠곡군 소재 보물 「칠곡 송림사 오층전탑」 주변 창고를 건립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에 창고를 건립하는 행위가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2구역 “경사지붕(3:10 이상) 최고높이 7.5m(1층) 이하”에 해당됨.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 : 칠곡 송림사 오층전탑
 - 소재지 : 경북 칠곡군 동명면 송림길73, 송림사(구덕리)
 - 지정일 : 1963. 01. 21.
-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경북 칠곡군 동명면 구덕리 113-1
 - 문화재와 이격거리 : 보호구역에서 153m
 - 사업내용 : 창고 건립
 - 건축면적(연면적) : 75.56㎡
 - 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일반철골조
 - 층수/최고높이 : 지상 1층 / 10m
 - 전석 쌓기 : H=0~3.9m, L=24m
 - 자연(조경)석 쌓기 : H=1m, L=37m

6. 칠곡 기성리 삼층석탑 주변 근린생활시설 신축(변경허가, 2차)

가. 제안사항

경북 칠곡군 소재 보물 「칠곡 기성리 삼층석탑」 주변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에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는 행위가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1구역 “원지형 보존”에 해당됨.
- ※ ‘18년 문화재위원회 제6차 건축문화재분과 심의결과(2018.06.21.) : 조건부가결
 - 옹벽이 높은 부분에 차폐식재토록 함
- ※ ‘19년 7월 제1차 자체검토회의 결과(2019.07.10. / 변경허가) : 부결
 - 역사문화경관 저해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 : 칠곡 기성리 삼층석탑
 - 소재지 : 경북 칠곡군 동명면 기성리 1028번지
 - 지정일 : 1969. 06. 21.
-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경북 칠곡군 동명면 기성리 997-6 외 1필지
 - 문화재와 이격거리 : 보호구역에서 120m

○ 사업내용 : 근린생활시설 신축

구분	'18.06.21. (조건부가결)		'19.07.10. (변경허가 1차 / 부결)	금차
	A (2개동)	B (2개동)		
건축면적 (연면적)	141.61㎡ (140.99㎡)	125.61㎡ (124.99㎡)	525㎡ (975㎡)	좌동
구조	철근콘크리트	철근콘크리트	철골구조	좌동
층수	지상 1층	지상 1층	지하 1층, 지상 1층	좌동
최고높이	4m	4m	10.7m	10.2m
옹벽	H=0.5~4.5m, L=42.5m	H=0.5~4.5m, L=62m	H=5.0m, L=57m	좌동
전석쌓기	-	-	H=0.6~5.4m, L=84m	좌동
기타	-	-	대지경계 차폐용 조경수 식재 (수고 3m이상)	대지경계 차폐용 조경수 식재 (수고 6m이상)

7. 청양 읍내리 석조여래삼존입상 주변 공동주택(고령자 복지주택) 신축

가. 제안사항

충남 청양군 소재 보물 「청양 읍내리 석조여래삼존입상」 주변 공동주택 (고령자 복지주택)을 신축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에 공동주택(고령자 복지주택)을 신축하는 행위가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4구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에 해당됨(공통사항 :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
- (2) 대상문화재 : 청양 읍내리 석조여래삼존입상
 - 소재지 : 충남 청양군 청양읍 칠갑산로9길 58(읍내리)
 - 지정일 : 1963. 01. 21.
-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충남 청양군 청양읍 교월리 114번지 일원
 - 문화재와 이격거리 : 보호구역에서 340m
 - 사업내용 : 공동주택(고령자 복지주택) 신축
 - 건축면적(연면적) : 1,599.99㎡(8,892,88㎡)
 - 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 동수 : 3개동(아파트 2동, 부대복리 1동)
- 층수 :
 - 아파트(2동) : 지하 1층, 지상 13층~14층
 - 부대복리(1동) : 지하1층, 지상2층
- 최고높이 : 44.5m

8. 용인 서봉사지 현오국사탑비 주변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신축(4차, 재심의)

가. 제안사항

경기 용인시 소재 보물 「용인 서봉사지 현오국사탑비」 주변에 근린생활 시설 및 단독주택을 신축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에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을 신축하는 행위가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1구역 “개별심의”, 제2구역 “평지붕 최고높이 11m, 경사지붕 최고높이 15m 이하”에 해당됨.
- ※ ‘18년 문화재위원회 제10차 건축문화재분과 심의결과(2018.10.18) : 부결
 - 역사문화경관 저해
- ※ ‘18년 문화재위원회 제11차 건축문화재분과 심의결과(2018.11.15) : 부결
 - 역사문화경관 저해
- ※ ‘18년 문화재위원회 제12차 건축문화재분과 심의결과(2018.12.20) : 부결
 - 절토량 과다 및 토목도면 보완 필요/ 역사문화경관 저해
- ※ ‘19년 문화재위원회 제10차 건축문화재분과 심의결과(2019.10.19.) : 보류
 - 관계전문가 현지조사 후 재심의

다. 주요내용

(1) 신청인 : ○○○

(2) 대상문화재 : 용인 서봉사지 현오국사탑비

○ 소재지 : 경기 용인시 수지구 신봉동 산11번지

○ 지정일 : 1963. 01. 21.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경기 용인시 수지구 신봉동 746-1 외 2필지

- 문화재와 이격거리 : 보호구역에서 415m

○ 사업내용 :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신축

구분	1차 (‘18.10.18. / 부결)	2차 (‘18.11.15. / 부결)	3차 (‘18.12.20. / 부결)	4차 (‘19.10.19. / 보류)	금차 (4차 수정(안))
사업부지 면적	1,823㎡	좌동	좌동	2,795㎡	좌동
건축면적 (연면적)	364.13㎡ (2,836.59㎡)	좌동	76.63㎡ (1,688.88㎡)	520.59㎡ (1,633.49㎡)	518.93㎡ (1,298.87㎡)
층수 및 최고높이	지하1층, 지상4층 / 20.86m(평지붕)	지하1층, 지상4층 / 14.91m(평지붕)	지하1층, 지상3층 / 10.99m(평지붕)	지하1층, 지상2층 / 10.2m(평지붕)	지하1층, 지상2층 / 10.65m(평지붕)
건축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좌동	좌동	좌동	좌동

9. 완주 송광사 대웅전 주변 종각 건립(재심의)

가. 제안사항

전북 완주군 소재 보물 「완주 송광사 대웅전」 주변에 종각 건립공사를 시행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에 송광사 종각을 건립하고자 하는 행위가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국가지정문화재 보호구역 내임.
- ※ ‘19년 문화재위원회 제10차 건축문화재분과 심의결과(2019.10.19.) : 보류
 - 관계전문가 현지조사 후 재심의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 : 완주 송광사 대웅전
 - 소재지 : 전북 완주군 소양면 송광수만로 255-16, 송광사(대흥리)
 - 지정일 : 1996. 05. 26.
-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전북 완주군 소양면 송광수만로 255-16, 송광사(대흥리)
 - 문화재와 이격거리 : 보호구역 내
 - 사업내용 : 완주 송광사 종각 건립
 - 건축면적 : 당초(안) 45.9㎡(13.88평) ⇒ 금차(안) 41.76㎡(12.63평)
 - 평면 : 정면3칸, 측면2칸
 - 양식 : 다포계 양식(외2출목, 내3출목)
 - 지붕 : 팔작지붕

10. 파주 공효공 박중손묘 장명등 주변 방송통신시설(3부지) 신축(재심의)

가. 제안사항

경기 파주시 소재 보물 「파주 공효공 박중손묘 장명등」 주변 방송통신시설 (3부지) 건립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 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 방송통신시설 설치하는 행위가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3구역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에 해당됨.
- ※ ‘19년 문화재위원회 제10차 건축문화재분과 심의결과(2019.10.19.) : 보류
 - 관계전문가 현지조사 후 재심의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
- (2) 대상문화재 : 파주 공효공 박중손묘 장명등
 - 소재지 : 경기 파주시 탄현면 오금2리 산19 번지
 - 지정일 : 2001. 09. 21.
-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경기 파주시 탄현면 오금리 58-8번지
 - 문화재와 이격거리 : 보호구역에서 207m
 - 사업내용 : 방송통신시설 신축
 - 건축면적(연면적) : 960.0㎡
 - 주 건축물 수 : 2동

- 층수/최고높이 : 1층 / 7.5m
- 주용도 : 촬영소

11. 파주 공효공 박중손묘 장명등 주변 방송통신시설(4부지) 신축(재심의)

가. 제안사항

경기 파주시 소재 보물 「파주 공효공 박중손묘 장명등」 주변 방송통신시설 (4부지) 건립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 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 방송통신시설 설치하는 행위가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3구역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에 해당됨.
- ※ ‘19년 문화재위원회 제10차 건축문화재분과 심의결과(2019.10.19.) : 보류
 - 관계전문가 현지조사 후 재심의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
- (2) 대상문화재 : 파주 공효공 박중손묘 장명등
 - 소재지 : 경기 파주시 탄현면 오금2리 산19 번지
 - 지정일 : 2001. 09. 21.
-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경기 파주시 탄현면 오금리 58-7번지
 - 문화재와 이격거리 : 보호구역에서 197m
 - 사업내용 : 방송통신시설 신축
 - 건축면적(연면적) : 960.0㎡
 - 주 건축물 수 : 2동

- 층수/최고높이 : 1층 / 7.5m
- 주용도 : 촬영소

12. 파주 공효공 박중손묘 장명등 주변 방송통신시설(5부지) 신축(재심의)

가. 제안사항

경기 파주시 소재 보물 「파주 공효공 박중손묘 장명등」 주변 방송통신시설 (5부지) 건립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 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 방송통신시설 설치하는 행위가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3구역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에 해당됨.
- ※ ‘19년 문화재위원회 제10차 건축문화재분과 심의결과(2019.10.19.) : 보류
 - 관계전문가 현지조사 후 재심의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 : 파주 공효공 박중손묘 장명등
 - 소재지 : 경기 파주시 탄현면 오금2리 산19 번지
 - 지정일 : 2001. 09. 21.
-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경기 파주시 탄현면 오금리 58-3번지
 - 문화재와 이격거리 : 보호구역에서 196m
 - 사업내용 : 방송통신시설 신축
 - 건축면적(연면적) : 960.0㎡
 - 주 건축물 수 : 2동

- 층수/최고높이 : 1층 / 7.5m
- 주용도 : 촬영소

13. 구례 연곡사 동 승탑 주변 길상암 건립(변경허가, 2차)

가. 제안사항

전남 구례군 소재 국보 「구례 연곡사 동 승탑」 주변 길상암 건립을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 길상암 건립이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1구역 “개별심의”에 해당됨.
- ※ ‘19년 문화재위원회 제3차 건축문화재분과 심의결과(2019.03.21) : 부결
 - 길상암 건립 부지 전체 계획안 확인 후 심의
- ※ ‘19년 문화재위원회 제4차 건축문화재분과 심의결과(2019.04.18) : 부결
 - 지형변화가 크고 역사문화경관 저해
- ※ ‘19년 문화재위원회 제6차 건축문화재분과 심의결과(2019.06.20) : 조건부가결
 - 지형훼손 최소화, 담장 구간 재검토
- ※ ‘19년 문화재위원회 제8차 건축문화재분과 변경허가 심의결과(2019.08.22) : 부결
 - 변경신청안은 현 지형에 대한 고려 미흡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 : 구례 연곡사 동 승탑
 - 소재지 : 전남 구례군 토지면 내동리 산54-1 연곡사
 - 지정일 : 1962. 12. 20.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전남 구례군 토지면 내동리 1008, 1008-2
 - 문화재와 이격거리 : 보호구역에서 110m
- 사업내용 : 길상암 건립

구분	'19.04.18. (부결)	'19.06.20. (조건부 가결)	'19.08.22. (변경허가 / 부결)		금차	
대지면적	1,927㎡	좌동	좌동		좌동	
건축면적	70.56㎡	요사채 (99㎡)	요사채 (90㎡)	법당 (27.72㎡)	법당 (90㎡)	공양간 (39.6㎡)
주구조	한식목구조	한식목구조	한식목구조	한식목구조	한식목구조	한식목구조
층수/ 최고높이	1층/6.42m	좌동	1층/6.22m	1층/6.73m	1층/7.06m	1층/5.5m
지붕	맞배지붕	좌동	맞배지붕	팔작지붕	팔작지붕	맞배지붕
기타	공양간 (82.8㎡), 선방 (31.68㎡) (추후건립)	석축 H=1.8m, L=131m 담장 H=1.2m, L=131m	가. 석축 및 배수로 H=1.5m, L=24m 나. 석축 및 배수로 H=1.8m, L=31m 다. 담장 H=0.9m, L=28m, 석축 H=1.2m, L=29m 라. 담장 H=0.9m, L=36m, 석축 H=1.8m, L=37m 마. 석축 H=1.2m, L=21m		거친돌 석축 H=1.5m(L=69m) H=0.9m(L=25m) H=1.0m(L=44m) 돌각담장 H=0.9m(L=42m)	

14. 안성 봉업사지 오층석탑 주변 주택 신축 및 도로 개설

가. 제안사항

경기 안성시 소재 보물 「안성 봉업사지 오층석탑」 주변에 주택 신축 및 도로 개설을 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 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에 주택 신축 및 도로 개설 하고자 하는 행위가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1구역 “개별심의”에 해당됨.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 : 안성 봉업사지 오층석탑
 - 소재지 : 경기 안성시 죽산면 죽산리 148-5 외 1필지
 - 지정일 : 1966. 02. 28.
-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경기 안성시 죽산면 죽산리 230, 231, 729번지
 - 문화재와 이격거리 : 보호구역에서 403m
 - 사업내용 : 단독주택 신축 및 도로 개설
 - 대지면적 : 694.0㎡
 - 건축(연)면적 : 65.8㎡
 - 건물용도 : 단독주택(2동)
 - 건물층수/최고높이 : 1층 / 4.3m

15. 장흥 보림사 남·북 삼층석탑 및 석등 주변 명상힐링센터 건립

가. 제안사항

전남 장흥군 소재 보물 「장흥 보림사 남·북 삼층석탑 및 석등」 주변 명상 힐링센터 건립을 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에 명상힐링센터 건립하고자 하는 행위가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1구역 “개별심의”에 해당됨.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
- (2) 대상문화재 : 장흥 보림사 남·북 삼층석탑 및 석등
 - 소재지 : 전남 장흥군 유치면 봉덕리 45번지
 - 지정일 : 1962. 12. 20.
-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전남 장흥군 유치면 보림사로 224
 - 문화재와 이격거리 : 보호구역에서 50m
 - 사업내용 : 명상힐링센터 건립
 - 대지면적 : 426.0㎡
 - 건축(연)면적 : 92.97㎡(123.35㎡)
 - 건물용도
 - 지상1층 : 명상공간, 로비 및 휴게실, 창고, 화장실
 - 지상2층 : 강당, 다용도실, 화장실, 방
 - 건물층수/최고높이 : 2층 / 8.3m

16. 고성 건봉사 능파교 주변 템플스테이 체험관 및 부대시설 건립

가. 제안사항

강원 고성군 소재 보물 「고성 건봉사 능파교」 주변 템플스테이 체험관 및 부대시설을 건립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에 템플스테이 체험관 및 부대시설을 건립하고자 하는 행위가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천연기념물 ‘향로봉·건봉산천연보호구역’ 지정구역 및 보물 ‘고성 건봉사 능파교’ 보호구역에 해당됨.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 : 고성 건봉사 능파교
 - 소재지 : 강원 고성군 거진읍 건봉사로 723
 - 지정일 : 2002. 02. 06.
-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강원 고성군 거진읍 냉천리 36, 32-1, 34, 37
 - 문화재와 이격거리 : 지정구역 및 보호구역 내
 - 사업내용 : 템플스테이 체험관 및 부대시설 건립
 - 1) 템플스테이 체험관
 - 면적 / 높이 : 707.83㎡(214.12평) / 11.5m
 - 지상 1층 : 209.9㎡(63.5평), 한식목조, 5량가, 팔작지붕, ‘ㄱ’자 평면
 - 지하 1층 : 454.4㎡(137.5평), 철근콘크리트조

- 지하 2층 : 43.54m²(13.18평), 소방용 저수조
- 용도 : 법당, 공양실, 숙소, 편의시설

2) 휴게시설

- 면적 / 높이 : 61.38m²(18.57평) / 4.8m
- 구조 / 양식 : 한식목조 / 굴도리집, 3량가, 맞배지붕, ‘ㄱ’자 평면

3) 화장실

- 면적 / 높이 : 18.00m²(5.45평) / 4.95m
- 구조 / 높이 : 한식목조 / 굴도리집, 3량가, 맞배지붕, ‘一’자 평면

4) 자비원

- 면적 / 높이 : 102.06m²(30.87평) / 5.45m
- 구조 / 높이 : 한식목조 / 납도리집, 5량가, 맞배지붕, ‘一’자 평면

17. 철원 도피안사 삼층석탑 주변 단독주택 부지조성(변경허가, 2차)

가. 제안사항

강원 철원군 소재 보물 「철원 도피안사 삼층석탑」 주변 단독주택 부지를 조성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에 단독주택 부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행위가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1구역 “개별심의”에 해당됨.
- ※ ‘18년 문화재위원회 제6차 건축문화재분과 심의결과(2018.06.21.) : 부결
 - 역사문화경관 저해
- ※ ‘18년 문화재위원회 제12차 건축문화재분과 심의결과(2018.12.20.) : 원안가결
- ※ ‘19년 3월 제1차 자체검토회의 결과(2019.03.13. / 변경허가) : 부결
 - 역사문화경관 저해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 : 철원 도피안사 삼층석탑
 - 소재지 : 강원 철원군 동송읍 관우리 423번지
 - 지정일 : 1963. 01. 21.
-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강원 철원군 동송읍 관우리 422번지
 - 문화재와 이격거리 : 보호구역에서 210m

○ 사업내용 : 단독주택 부지조성

구 분	'18.12월 / 가결	'19.3월(변경허가) / 부결	금차
신청인	○○○	○○○	좌동
대지면적	33,515m ²	좌동	좌동
사업면적	9,653m ²	10,420m ²	7,490m ²
동수	6개동	10개동	좌동
절·성토	최대 4.8m	최대 11.74m	최대 4.99m
석축 높이	식생블록 최대 2m	식생블록 최대 8m	자연석쌓기 최대 9.9m

18.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안)

가. 제안사항

국보 「포항 냉수리 신라비」 등 4건의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안)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안)의 타당성 및 합리성 등에 대하여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추진경위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 지침」(훈령 제399호, '16.04.29) 개정 등을 반영하여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

(2) 대상 문화재 : 국보 「포항 냉수리 신라비」 등 4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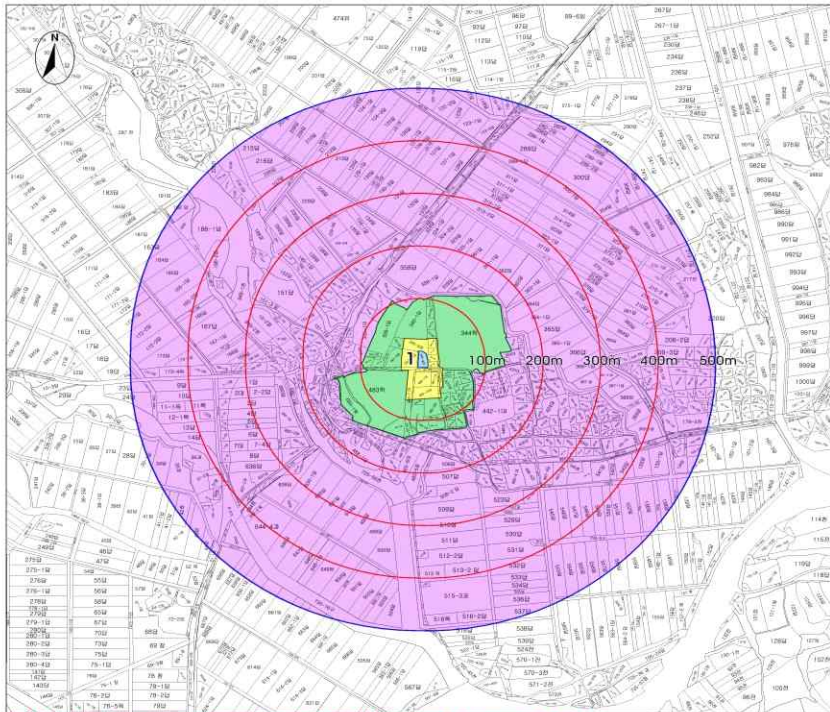
연번	유형	지정번호	문화재명	허용기준	
				지형도면	범례표
1	국보	264	포항 냉수리 신라비	제1,2,3구역 및 공통사항 허용기준 변경	1구역 (평5m/경7.5m→개별심의), 2구역 (평8m/경12m→평5m/경7.5m), 공통사항 조정

연 번	유 형	지 정 번 호	문 화 재 명	허용기준	
				지 형 도 면	범 례 표
2	보물	674	영덕 유금사 삼층석탑	제1,2,3구역 및 공통사항 허용기준 변경	1구역 (원지형 보존→개별심의), 2구역 (평8m(2층)/경12m(2층)→ 평5m/경7.5m), 3구역 (없음→평8m/경12m), 공통사항 조정
3	보물	677	청도 장연사지 동·서 삼층석탑	제1,2,3구역 및 공통사항 허용기준 변경	1구역 (원지형 보존→개별심의), 2구역 (평5m/경7.5m→평8m/경12m), 공통사항 조정
4	보물	836	청도 대적사 극락전	제1,2,3,4구역 및 공통사항 허용기준 변경	1구역 (원지형 보존→개별심의), 3구역 (관련법→평8m/경12m), 4구역 (없음→관련법), 공통사항 조정

[붙임]

국보 제264호 “포항 냉수리 신라비”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지형도면(당초) 】



* 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향분야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축척 및 타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대상문화재
1. 포항 냉수리 신라비(국보 제264호)
- 위치: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신량면 토성리 34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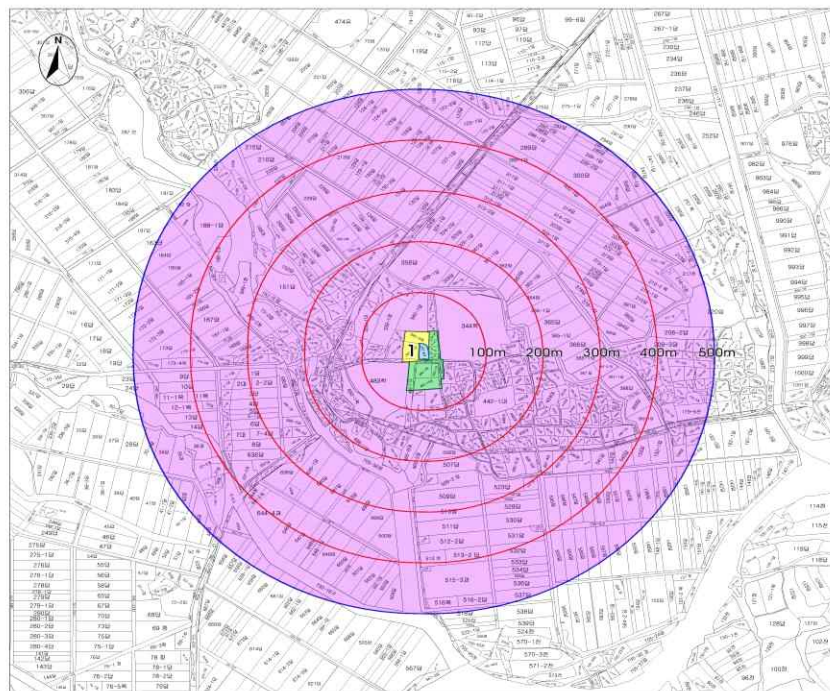
문화재 및 보호구역
문화재구역 문화재보호구역

구역별 허용기준

항목	방치량	허용기준	용도
1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5m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7.5m이하	
2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8m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12m이하	
3구역	국립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관련 법에 따라 차등·고지선을 기준으로 방정면적의 4배에서 용적률의 2배까지 초과하는 용적률의 초과분을 초과하여 변경행위 허용기준을 재조정할 수 있음.		

규격
0 50m 100m 200m A3 : 1/5,000

【 지형도면(변경) 】



* 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향분야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축척 및 타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대상문화재
1. 포항 냉수리 신라비(국보 제264호)
- 위치: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신량면 토성리 342-1

문화재구역
문화재 문화재보호구역

구역별 허용기준

항목	방치량	허용기준	용도
1구역	계절성임	건축물 최고높이 7.5m이하	
2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8m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12m이하	
3구역	국립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관련 법에 따라 차등·고지선을 기준으로 방정면적의 4배에서 용적률의 2배까지 초과하는 용적률의 초과분을 초과하여 변경행위 허용기준을 재조정할 수 있음.		

규격
0 50m 100m 200m A3 : 1/5,000

【 범례 표 (당초) 】

구 분	허 용 기 준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 최고높이 5m(1층) 이하	○ 최고높이 7.5m(1층) 이하	
제2구역	○ 최고높이 8m(2층) 이하	○ 최고높이 12m(2층) 이하	
제3구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 범례 표 (변경) 】

구 분	허 용 기 준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 개별심의		
제2구역	○ 최고높이 5m이하	○ 최고높이 7.5m이하	
제3구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 토록 함.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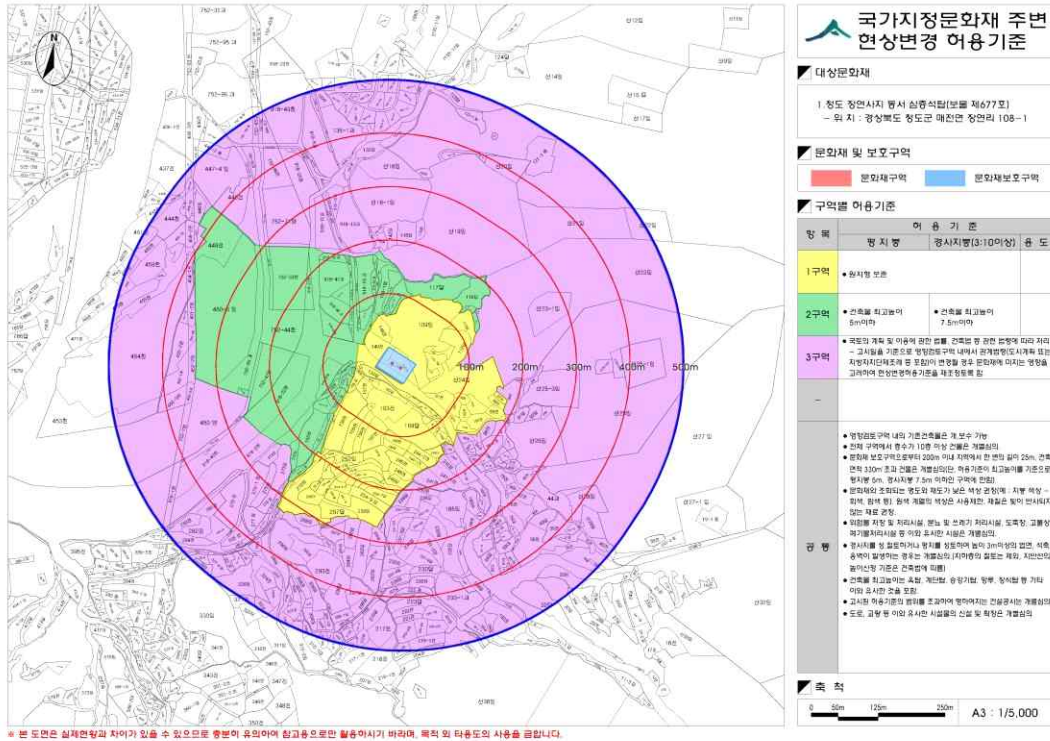
【 범례 표 (당초) 】

구 분	허 용 기 준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 원지형 보존		
제2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8m(2층)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2m(2층)이하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유급사 경내는 제외) ○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 (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 (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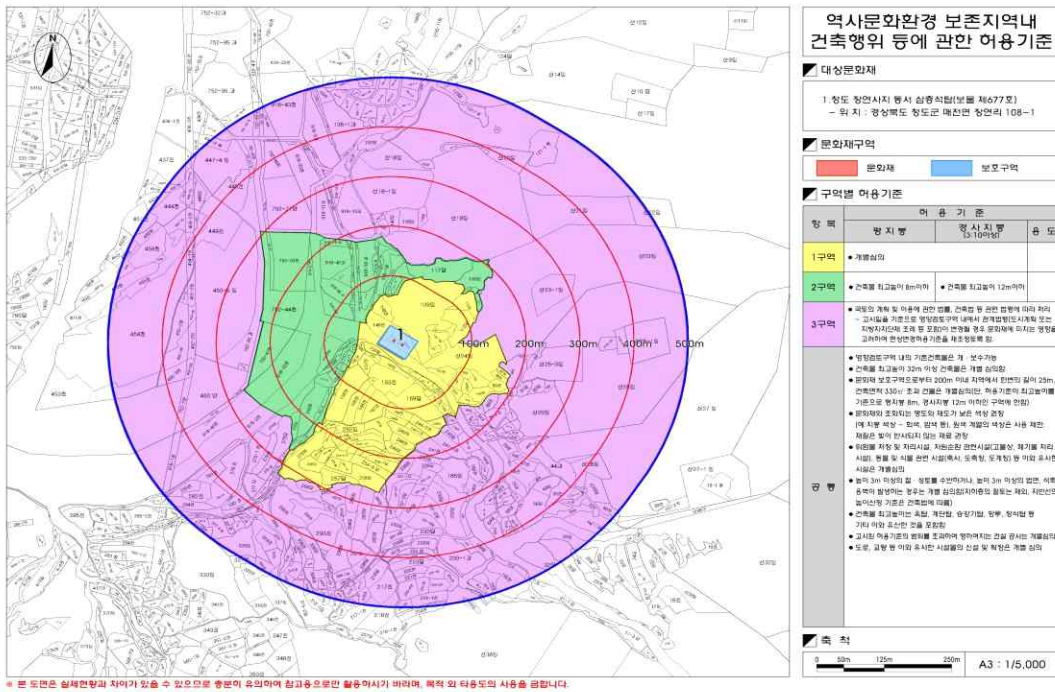
【 범례 표 (변경) 】

구 분	허 용 기 준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 개별심의		
제2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5m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7.5m이하	
제3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8m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2m이하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 보물 제677호 “청도 장연사지 동서 삼층석탑”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지형도면(당초) 】



【 지형도면(변경)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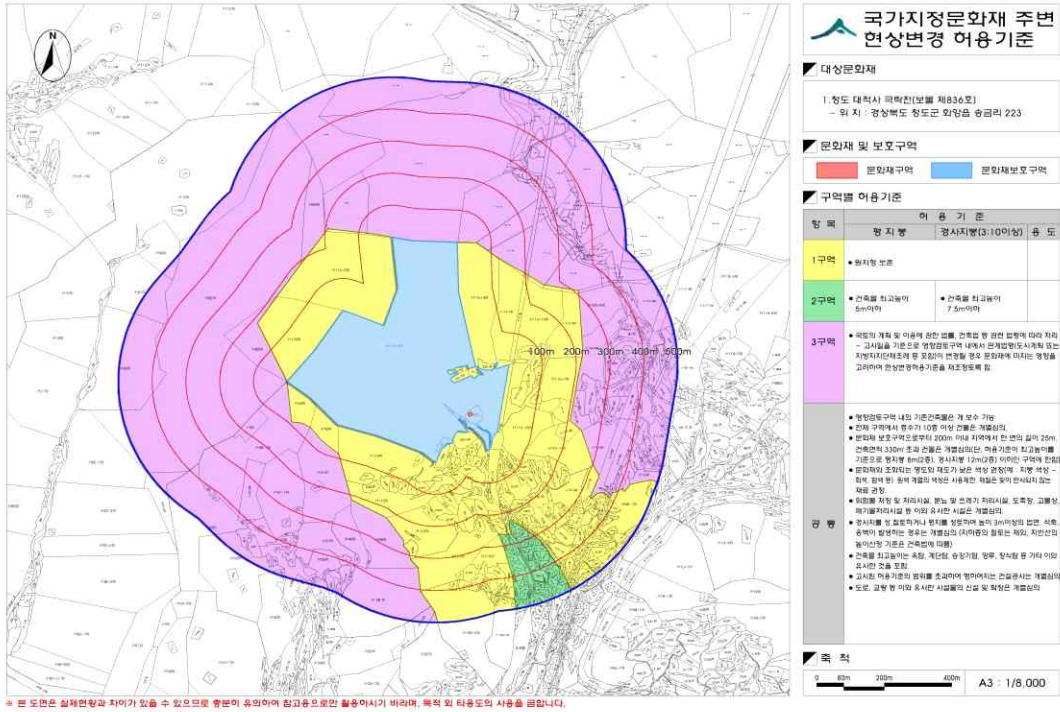
【 범례 표 (당초) 】

구 분	허 용 기 준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 원지형 보존		
제2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5m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7.5m이하	
제3구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 토록 함.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 (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노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 (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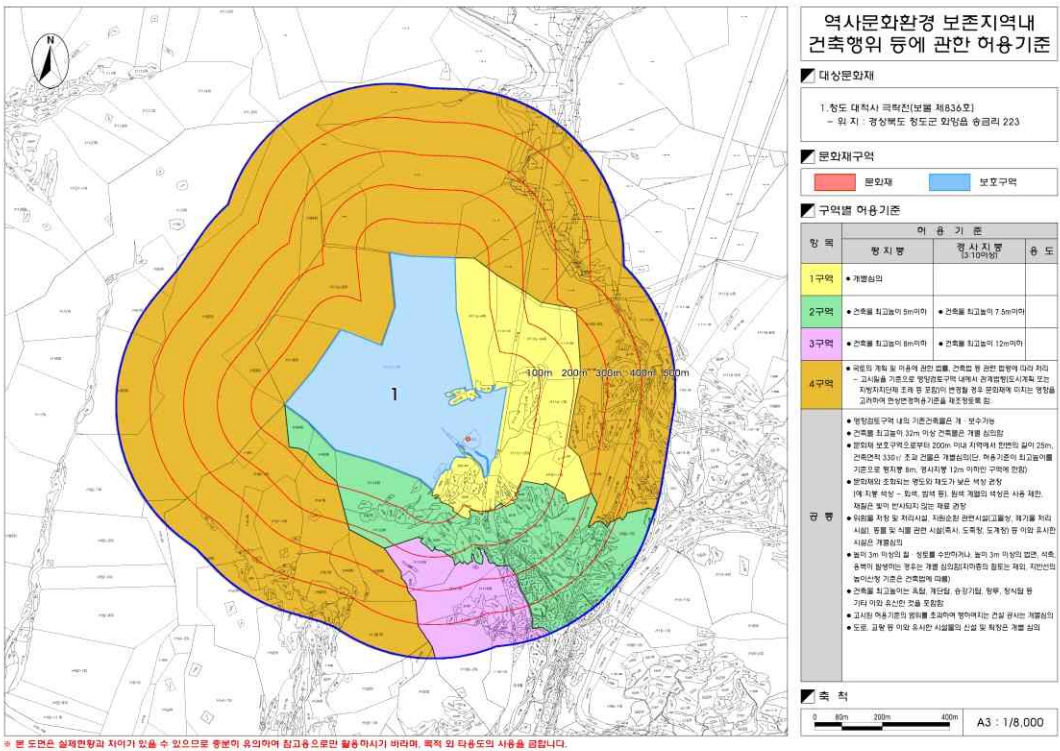
【 범례 표 (변경) 】

구 분	허 용 기 준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 개별심의		
제2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8m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2m이하	
제3구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 토록 함.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 보물 제836호 “청도 대적사 극락전”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지형도면(당초) 】



【 지형도면(변경) 】



【 범례 표 (당초) 】

구 분	허 용 기 준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 원지형 보존		
제2구역	○ 최고높이 5m(1층) 이하	○ 최고높이 7.5m(1층) 이하	
제3구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 범례 표 (변경) 】

항목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이상)	
제1구역	○ 개별심의		
제2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5m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7.5m이하	
제3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8m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2m이하	
제4구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 토록 함.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검토사항】

안건번호 건축 2019-12-019

19. 서울 동관왕묘 보수 관련 설계 검토

가. 제안사항

‘19년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으로 「서울 동관왕묘」 보수 계획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19년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 중인 「서울 동관왕묘」 보수 공사에 대하여 설계 검토 받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대상문화재 : 서울 동관왕묘

- 소재지 : 서울 종로구 난계로 27길 84(송인동 238-1)
- 지정일 : 1963. 01. 21.

(2) 사업내용

- 사업위치 : 서울 종로구 난계로 27길 84(송인동 238-1)
- 사업예산 : 2019년 1,163백만원(국비 815백만원, 지방비 349백만원)
- 사업지침 : 2018년도에 이어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연지 및 화계정비, 어막대 및 내부담장 복원, 유물 보존처리 등을 실시한다.
- 주요내용 : 동관왕묘 보수
 - 정전 : 노후한 배면 지붕기와 교체, 지붕 양성바름 탈락 및 균열 보수
 - 월대 : 노후 포방전을 신재료 교체, 기단석 드잡이 보수, 화단 취빙 설치
 - 동무 : 지붕 양성바름 탈락 및 균열 보수, 조류배설물에 의한 오염부분 단청보수, 노후한 용두 1기 교체, 조류침입 방지를 위해 부시망 설치

- 서무 : 지붕 양성바름 탈락 및 균열 보수, 조류배설물에 의한 오염부분 단청보수, 조류침입 방지를 위해 부시망 설치
- 중삼문 : 창방이하 부재 단청 보수(대문기준 외부만), 노후된 용두(1기) 교체(대문기준 외부만)
- 외삼문 : 지붕 양성바름 탈락 및 균열 보수
- 어도 : 중삼문과 외대문 사이의 어도 복원, 어도 바닥은 포장번으로 설치
- 어막대 : 중삼문과 외대문 사이의 어도와 어막대 사이 어도를 복원하고 어막대 어도 상부와 좌·우측에 계단을 설치
- 전사청지 : 발굴된 전사청 건물지에 초석을 복원하고 전사청 평면형태로 부지 조성 후 기단을 설치
- 우물 : 정전 좌측과 재실 좌측편에 발굴된 우물을 복원
- 지반 : 동관왕묘 내부지반은 다짐하여 마사토로 포장, 우수의 원활한 배수를 위하여 지반의 경사를 조성하고 유공관과 집수정 등을 설치
- 연지 : 연지 주변 추락방지를 위하여 보호철책 설치

20. 나주 철천리 석조여래입상 보호각 건립 검토(2차)

가. 제안사항

‘17년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 중인 「나주 철천리 석조여래입상」 보호각 건립 계획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17년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 중인 「나주 철천리 석조여래입상」 보호각 건립 설계안에 대하여 검토 받고자 하는 사항임.
- ※ ‘19년 문화재위원회 제8차 건축문화재분과 심의결과(2019.08.22) : 부결
 - 발굴결과와 설계안의 연관성 미흡
 - 보호각의 기능에 충실토록 함

다. 주요내용

- (1) 대상문화재 : 나주 철천리 석조여래입상
 - 소재지 : 전남 나주시 봉황면 철천리 산124-11
 - 지정일 : 1963. 01. 21.
- (2) 사업내용 : 보호각 건립
 - 사업지침 : 2015년도 사업으로 작성된 설계도서에 따라 보호각을 건립한다.
 - 사업예산 : 2015년 설계 70백만원, 2017년 건립 800백만원
 - 주요내용 : 보호각 건립
 - 건축면적 : 당초 98.01㎡ → 조정 51.84㎡
 - 층수/최고높이 : 중층/12.47m → 중층/13.95m
 - 구조 : 한식목구조

※ 조정사항

- 2단기단 ⇒ 1단기단
- 4,800mm 주간 ⇒ 3,600mm 주간(발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주간 설정)
- 팔작 지붕 ⇒ 모임 지붕
- 상륜 설치

21. 김천 직지사 유물 수장고 건립공사 설계 검토

가. 제안사항

‘19년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 중인 경북 김천시 소재 보물 「(전)구미 강락사지 삼층석탑」 유물 수장고 건립공사 설계(안)을 부의 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2019년도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 중인 보물 「(전)구미 강락사지 삼층석탑」 유물 수장고 건립 설계(안)의 적정성을 검토 받고자 하는 사항임.
- ※ ‘19년 문화재위원회 제2차 건축문화재분과 보고결과(2019.02.21.) : 원안접수 - 2019년도 문화재 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 추진계획 보고

다. 주요내용

- (1) 신 청 인 : 김천시장
- (2) 대상문화재 : 보물 「(전)구미 강락사지 삼층석탑」
 - 소 재 지 : 경북 김천시 대항면 북암길 89, 직지사
 - 지 정 일 : 1993. 11. 19.
- (3) 주요내용 : 김천 직지사 유물 수장고 건립 설계 검토

교부 연도	사업내용(지침)	교부예산		추진사항
		국비	지방비	
2019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적정규모의 수장고를 문화재 보존환경에 적합하고, 주변환경과 조화롭게 설계한다. 	100백만원		기본설계 중
		70	30	

* 2020년 예산(안) : 유물 수장고 건립 규모에 따른 적정 예산 반영 검토

- 사업위치 : 경북 김천시 대항면 직지사길 95, 직지사
 - 문화재와의 이격거리 : 보호구역 내
- 사업내용 : 김천 직지사 유물 수장고 건립
 - 연면적 : 790.80m²(239.23평) / 건축면적 : 394.80m²(119.43평)
 - 구조 및 규모 : 철근콘크리트 구조, 지하 1층, 지상 2층
 - 건립방법 : 기존 건물 철거 후 정보박물관과 연계하여 건립

구분	공간구성	연면적(m ²)	비중
수장공간	수장고 2실	497.53	63%
지원시설	관리실(화장실 포함)	26.27	3%
공용공간	기계실, 하역장, 복도(회랑), 계단, 리프트 등	267.00	34%
소 계		790.80	100%

22. 완주 안심사 요사채(공양간) 개축공사 설계 검토

가. 제안사항

‘19년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으로 「완주 안심사 금강계단」 주변 요사채(공양간) 개축공사 계획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19년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 중인 「완주 안심사 금강계단」 주변 요사채(공양간) 개축에 대하여 검토 받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대상문화재 : 완주 안심사 금강계단

- 소재지 : 전북 완주군 운주면 완창리 26번지 외 1필지
- 지정일 : 2005. 06. 15.

(2) 사업내용

- 사업위치 : 전북 완주군 운주면 완창리 산 31-1번지
- 사업예산 : 2019년 설계 190백만원(국비 133백만원, 지방비 57백만원)
- 사업지침 :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노후된 요사채(공양간)를 개축하기 위한 설계도서를 작성한다. 주변과 조화되는 적정규모로 설계한다.
- 주요내용 : 요사채(공양간) 개축 1식
 - 지하1층(철근콘크리트조)
 - 면적 : 147.6㎡ / 평면 : 정면1칸, 측면2칸, “一”자형 평면
 - 실구성 : 화장실, 샤워탈의실(남,여), 창고, 보일러실, 발효실

- 지상1층(한식목구조)

· 면적 : 384.64m² / 평면 : 정면11칸, 측면8칸, “丁”자형 평면

· 실구성 : 주지실, 응접실, 방 1~4, 공양실, 주방, 공양주실, 냉동고, 창고 1~3,
작업실

※ 기존 규모 : 348m²

· 요사채 : 108m²

· 공양간 : 240m²

23. 창녕 인양사 조성비 보호구역 추가 지정 검토

가. 제안사항

경남 창녕군 소재 보물 「창녕 인양사 조성비」 국가지정문화재 보호구역 추가 지정 사항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 인접 토지를 문화재 보존을 위하여 보호구역으로 추가 지정 하고자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창녕군수
- (2) 대상문화재 : 창녕 인양사 조성비
 - 소재지 : 경남 창녕군 창녕읍 교리 304-2
 - 지정일 : 1963. 01. 21.
- (3) 신청내용 : 문화재 보호구역 추가 지정
 - 기존 보호구역 : 경남 창녕군 창녕읍 교리 294-2번지 일원 4,395.8m²
 - 변경 보호구역 : 경남 창녕군 창녕읍 교리 294-2번지 일원 5,457.8m²

기존 보호구역			변경 보호구역			증 감		
필지	지적	지정면적	필지	지적	지정면적	필지	지적	지정면적
11	4,420m ²	4,395.8m ²	12	5,482m ²	5,457.8m ²	1	1,062m ²	1,062m ²

(4) 신청사유

- 2016년 발굴조사 결과 동쪽지역이 인양사 주 사역으로 판단된다는 자문 결과가 있었으며, 보호구역 확대 후 주변 정비 사업을 통해 향후 개발 등으로부터 유적을 보호하고자 함.

라. 추가지정 대상 및 범위

연 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보호 구역㎡)	소유자		비 고
						성명	주소	
1	창녕읍 교리	293-1	답	1,515	1,515	창녕군		
2		293-2	답	30	29.8	창녕군		
						○○○		
3		293-3	답	102	102	창녕군		
4		293-4	답	16	16	창녕군		
5		294-2	답	86	62	창녕군		
6		294-4	도로	66	66	창녕군		
7		294-5	답	99	99	창녕군		
8		294-8	답	404	404	창녕군		
9		294-9	답	257	257	창녕군		
10		302-3	답	906	906	창녕군		
11		303	답	939	939	창녕군		
12	304-2	답	1,062	1,062	○○○		추가	
계				5,482	5,457.8			

【보고사항】

안건번호 건축 2019-12-024

24.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처리결과 보고

가. 보고사항

경북 영주시 소재 국보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 주변 마을안길 정비공사 등 허가신청 19건에 대하여 자체검토회의 등을 거쳐 다음과 같이 처리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나. 처리내용

문화재명	소재지 (신청인)	사업내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소 계		19건	원안가결 16건 조건부가결 2건 부결 1건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	경북 영주 (○○○)	<input type="checkbox"/> 마을안길 정비공사 ○ 위치 : 영주시 부석면 북지리 285번지 일원 * 제1구역(보호구역에서 430m 이격) ○ 사업내용 - 콘크리트포장 : B=4.0m, B'=3.0m, L=24m - 흡관설치 : D=800mm, L=30m * 기존 콘크리트포장 깨기 후 포장	원안가결	'19.10.29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	경북 영주 (○○○)	<input type="checkbox"/> 세천 정비공사 ○ 위치 : 영주시 부석면 북지리 272번지 일원 * 제1구역(보호구역에서 460m 이격) ○ 사업내용 : 석축 설치 - 규모 : H=1.7m, L=60m	원안가결	'19.10.29

문화재명	소재지 (신청인)	사업내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예천 청룡사 석조여래좌상	경북 예천 (○○○)	<input type="checkbox"/> 삼성각 개축(변경허가) ○ 위치 : 예천군 용문면 선리 520-2 * 보호구역 내 ○ 사업내용 - 건축(연)면적 : 17.01m ² (축 변경 및 위치 이동) - 구조 : 한식목구조 - 층수/높이 : 1층/4.92m - 석축쌓기 : L=16.8m, H=0.1~1.7m - 석축보수 : L=16.5m, H=0.45~0.7m - 계단해체보수 : L=12.3m, W=1.8m, H=5.39m	원안가결	'19.10.29
여주 창리 삼층석탑 / 여주 하리 삼층석탑	경기 여주 (○○○)	<input type="checkbox"/> 주내로 일원 보도설치 ○ 위치 : 여주시 상동 76번지 일원 * 제1,3,4구역(보호구역에서 42m 이격) ○ 사업내용 - 보도설치(폭 2.0m, 연장 550m) - 사업면적 1,322m ²	원안가결	'19.10.29
장수향교 대성전	전북 장수 (○○○)	<input type="checkbox"/> 장수초 창의모험 놀이터 조성 ○ 위치 : 장수군 장수읍 향교길 11-8 * 제1구역(보호구역에서 100m 이격) ○ 사업내용 - 조합 놀이대 설치 : 2개소 - 토공 : 76m ² / 탄성칩 포장 : 330m ² - 측구수로관 : 42m - 배수관(D400) : 6m	원안가결	'19.10.29
장수향교 대성전	전북 장수 (○○○)	<input type="checkbox"/> 청소년 놀이공간 조성사업 ○ 위치 : 장수군 장수읍 향교길 11-8 * 제1구역(보호구역에서 120m 이격) ○ 사업내용 - 파고라 및 벌집미로 설치 1식 - 바닥 탄성고무매트 설치	원안가결	'19.10.29

문화재명	소재지 (신청인)	사업내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논산 개태사지 석조여래삼존 입상	충남 논산 (○○○)	<input type="checkbox"/> 마을안길 포장공사 ○ 위치 : 논산시 연산면 천호리 412 * 제3구역(보호구역에서 106m 이격) ○ 사업내용 - 콘크리트포장 : B=1.6m, T=0.2m, L=90m	원안가결	'19.10.29
대구 동화사 대웅전	대구 동구 (○○○)	<input type="checkbox"/> 부도 및 행화비 건립 및 석축 설치(변경 허가) ○ 위치 : 동구 동학동 산124-1 * 제1구역(보호구역에서 220m 이격) ○ 추가내용 : 석축 설치 - 석축 설치(12개소) : L=125m, H=0.30~1.50m	원안가결	'19.10.29
임실 진구사지 석등	전북 임실 (○○○)	<input type="checkbox"/> 농막 설치 ○ 위치 : 임실군 신평면 용암리 66-2번지 * 제1구역(보호구역에서 461m 이격) ○ 사업내용 : 농막 설치(1동) - 건축면적 : 18㎡ - 재질 : 철골프레임 - 농막구성 : 화장실 겸 목욕실 주방겸 숙소(썩크대 설치)	원안가결	'19.10.29
영덕 유금사 삼층석탑	경북 영덕 (○○○)	<input type="checkbox"/> 지붕 위 태양광 설치 ○ 위치 : 영덕군 병곡면 유금길 229 (금곡리 803) * 제1구역(보호구역에서 330m 이격) ○ 내용 - 태양광 설비면적 : 16㎡ - 태양광 설비구조 : 금속 공작물 - 높이 : 건물높이 4m + 구조물 높이 1m = 5m	원안가결	'19.11.12

문화재명	소재지 (신청인)	사업내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진도 금골산 오층석탑	전남 진도 (○○○)	<input type="checkbox"/> 동식물관련시설 축사(우사) 신축 ○ 위치 : 진도군 군내면 덕병리 4번지 * 제4구역(보호구역에서 380m 이격) ○ 사업내용 : 우사 신축 - 건축면적 : 1,797㎡	원안가결	'19.11.12
경산 팔공산 관봉 석조여래좌상	경북 경산 (○○○)	<input type="checkbox"/> 생태탐방로 조성사업 ○ 위치 : 경산시 와촌면 대한리 산42 외 3필지 * 제1구역(보호구역에서 24m 이격) ○ 사업내용 - 안내판 : 8개소(W=0.7m~3m, H=1.4m~1.8m) - 난간 : 로프난간 73경간(W=1.5m, H=1.2m) - 계단 : 돌계단 27단(W=1.2m), 목재계단 7단(W=1.2m) - 데크A(W=1.5m, L=33.43m, 데크B(W=1.5m, L=32.07m) - 부대공 : 토사밀림 방지대(3단, 각재형, 43경간)	원안가결	'19.11.12
경주 서악동 귀부	경북 경주 (○○○)	<input type="checkbox"/> 단독주택 건립 ○ 위치 : 경주시 서악동 895-1,895-3, 산 57번지 * 제1구역(보호구역에서 340m 이격) ○ 사업내용 - 건축(연)면적 : 60.75㎡(60.75㎡) - 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 층수/높이 : 지상 1층/5.48m - 석축 : H=0.5~1.5m, L=54.5m - 콘크리트포장 : T=20cm, A=61.56㎡ - 이중벽관(D300) L=24.0m - 집수정(0.4x0.4x0.75) 7EA	원안가결	'19.11.12

문화재명	소재지 (신청인)	사업내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제천 신록사 삼층석탑	충북 제천 (○○○)	<input type="checkbox"/> 소방방재시설 구축 ○ 위치 : 제천시 덕산면 월악산로4길 180 * 보호구역 내 ○ 사업내용 : 소방방재시설(1동) 구축 - 건축면적 : 13.03㎡ - 층수/높이 : 지상 1층/4.555m	원안가결	'19.11.12
장흥 보림사 남·북 삼층석탑 및 석등	전남 장흥 (○○○)	<input type="checkbox"/> 유치천 복원정비사업 ○ 위치 : 장흥군 유치면 봉억리 32, 37-4, 39-3 등 4필지 일원 * 제1구역(보호구역에서 120m 이격) ○ 사업내용 · 수질개선 : 습지수로 및 집약형 습지 (A=1,370㎡) · 하천식생 및 정화식물 식재 : 4,000㎡ · 생태탐방로(디딤석 놓기) : 222개소 · 진입램프 : 2개소 설치	원안가결	'19.11.12
안성 청룡사 대웅전	경기 안성 (○○○)	<input type="checkbox"/> 청룡 소하천 정비 ○ 위치 : 안성시 서운면 청룡리 62-7번지 일원 * 제2구역(보호구역에서 212m 이격) ○ 사업내용 : 소하천 정비 - 절토 154㎡, 터파기 19㎡, 사토운반 161㎡ - 자연석쌓기(500*600*700) A=71㎡ (L=17m, H=4.0~4.6m) - 보도블록 재설치 A=20㎡ - 도로경계석(150*150) L=17m	원안가결	'19.11.12

문화재명	소재지 (신청인)	사업내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서울 동관왕묘	서울 종로 (○○○)	<input type="checkbox"/> 기존 하수관거 개량 및 신설 ○ 위치 : 종로구 송인동 일대 * 보호구역 인근 ○ 사업내용 - 하수관거(D400~D1,350) 개량 : L=1,267.3m - 하수관거(D400~D1,350) 개량 : L=32.3m	조건부가결 (- 관계 전문가 자문을 받아 문화재 주변에 계측기를 부착하고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체크할 것 - 도로 굴착 시 포장두께로 절단하여 포장들어내 기 시공을 실시하여 문화재에 영향 최소화)	‘19.10.29
부안 내소사 대응보전	전북 부안 (○○○)	<input type="checkbox"/> 가을 산사음악회 개최 ○ 위치 : 부안군 진서면 석포리 268 * 보호구역 내 ○ 사업내용 - 음악회 개최 관련 특설무대 설치 1식	조건부가결 (소방시설 등 안전대책 수립, 안전요원 배치 후 행사진행)	‘19.10.31

문화재명	소재지 (신청인)	사업내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거창 농산리 석조여래입상	경남 거창 (○○○)	<input type="checkbox"/> 동식물관련시설(우사) 적법화 ○ 위치 : 거창군 북상면 농산리 223-1 * 제1구역(보호구역에서 130m 이격) ○ 사업내용 : 우사 적법화 - 면적 : 701.63㎡ - 높이 : 6.4m - 구조 : 일반철골조(강판) - 기타 · '07년 창고시설(퇴비사)로 준공 · '11년 동·식물관련시설(축사)로 사용 · '14년 축사 비가림 시설 증설	부결 (진입부 역사문화환 경 지해)	'19.10.29